

하 동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603호 2023. 9. 26.(화요일)

고 시

- 하동군 고시 제2023-175호 하동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,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)고시 3
- 하동군 고시 제2023-176호 하동군계획시설 【소로3-110호선(백련도로)】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8

입 법 예 고

- 하동군 공고 제2023-1294호 「하동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」 개정안 입법예고 13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하동군 편집 : 기획예산과 (055)880-2041, 행정2041

하동군 고시 제2023 - 175호

하동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,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
하동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오니,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09. 26.

하 동 군 수

- 1. 건 명 : 하동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
- 2. 하동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교통시설

○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16	8	국지 도로	194	중로3-1호선	중로3-6호선	일반 도로	-	군고28호 11.06.30	
변경	소로	2	16	8	국지 도로	97	중로3-1호선	진교면 진교리 426-11	일반 도로	-	군고28호 11.06.30	노선 축소
기정	소로	2	17	8	국지 도로	251	중로3-5호선	소로2-16호선	일반 도로	-	군고28호 11.06.30	
변경	소로	2	17	8	국지 도로	251	중로3-5호선	소로2-16호선	일반 도로	-	군고28호 11.06.30	가각 축소
기정	소로	3	6	6	국지 도로	128	소로1-6호선	소로2-16호선	일반 도로	-	군고28호 11.06.30	
변경	소로	3	6	6	국지 도로	84	소로1-6호선	진교면 진교리 426-52	일반 도로	-	군고28호 11.06.30	노선 축소

주) 기정 : 하동군 고시 제2011-28호(2011.06.30.)

○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2-16	소로2-16	◦ 노선축소 B=8m, L=194m → B=8m, L=97m(감97m)	◦ 진교면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
소로2-17	소로2-17	◦ 가각축소 → 폭원, 길이 변경 없음	◦ 진교면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
소로3-6	소로3-6	◦ 노선축소 B=6m, L=128m → B=6m, L=84m(감44m)	◦ 진교면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

○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22	주차장	노외 주차장	진교면 진교리 426-12 일원	4,834	감)4,834	-	군고14호 16.02.18	

주) 기정 : 하동군 고시 제2016-14호(2016.02.18.)

○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2	주차장	◦ 시설 폐지 A = 4,834㎡ → 0㎡ 감)4,834㎡	◦ 진교면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

나. 공간시설

○ 광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0	광장	문학광장	진교면 진교리 426-41 일원	-	증)24,912	24,912	-	공공청사5, 문화시설5 중복결정

○ 광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0	공공청사	◦ 공공청사 신설 A = 0㎡ → 24,912㎡ 증)24,912㎡	◦ 진교면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

다. 공공문화체육시설

○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5	공공청사	행정복합 타운	진교면 진교리 426-41 일원	-	증)24,912	24,912	-	광장10, 문화시설5 중복결정

○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	공공청사	○ 공공청사 신설 A = 0㎡ → 24,912㎡ 증)24,912㎡	○ 진교면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

○ 문화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5	문화시설	복합센터, 도서관	진교면 진교리 426-41 일원	-	증)24,912	24,912	-	광장10, 공공청사5 중복결정

○ 문화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	문화시설	○ 문화시설 신설 A = 0㎡ → 24,912㎡ 증)24,912㎡	○ 진교면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

○ 청소년수련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1	청소년 수련시설	청소년 수련시설	진교면 진교리 426-5 일원	3,736	감)3,736	-	군고28호 11.06.30	

주) 기정 : 하동군 고시 제2014-62호(2014.08.07.)

○ 청소년수련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청소년 수련시설	○ 시설 폐지 A = 3,736㎡ → 0㎡ 감)3,736㎡	○ 진교면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

라. 방재시설

○ 우수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8	우수지	우수지	진교면 진교리 425-7 일원	-	증)1,358	1,358	-	진교 배수지

○ 우수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8	우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수지 신설 A = 0㎡ → 1,358㎡ 증)1,358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교면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와 복지가 있는 문화행정복지복합타운 건설을 위해 광장,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우수지로 도시계획시설 정비

3.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조서

가.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-	진교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	진교면 진교리 426-41 일원	-	증) 26,270	26,270	

나. 세부 제한행위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허가사항

-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), 토석채취, 토지분할(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)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

○ 화원설치 및 수목식재 등 보상목적의 일체행위

○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

○ 허가할 수 있는 행위

- 국가 또는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로서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
-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

-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, 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시설의 설치
-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
- 제한고시 이전에 개발행위 등이 신청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

다. 제한기간

-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

4. 관계도면 : 게재 생략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도시과(☎055-880-2233)로 문의바랍니다.

하동군 공고 제2023 - 176호

하동군계획시설 【소로3-110호선(백련도로)】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하동군계획시설사업인 소로3-110호선(백련도로)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23. 9. 26.

하 동 군 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 - 경남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~고룡리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하동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3-A호선)사업
 - 명 칭 : 백련도로 확포장공사
3. 사업의 규모
 - 도로확포장공사 30,183㎡ (B=7m, L=1,790m)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하 동 군 수
 - 주 소 :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착 수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
 - 준 공 : 착수일로부터 24개월
6. 관계도면 : 실음 생략
7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조서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조서 참조
8.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과 (☎ 055-880-223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사

구분	위치	지번	지 목	면적(m ²)		소유자		비고
				대장 면적	편입 면적	주소	성명	
1	진교면 안삼리	125-1	도	215	5		하동군	
2	진교면 안삼리	125-2	도	271	24		하동군	
3	진교면 안삼리	108-1	도	13	13		하동군	
4	진교면 안삼리	108-4	답	51	51		하동군	
5	진교면 안삼리	110-1	전	410	410		하동군	
6	진교면 안삼리	111-3	전	321	321		하동군	
7	진교면 안삼리	113-1	전	221	221		하동군	
8	진교면 안삼리	112-1	전	85	85		하동군	
9	진교면 안삼리	115-1	잡	148	148		하동군	
10	진교면 안삼리	84-1	전	95	95		하동군	
11	진교면 안삼리	83-12	전	25	25		하동군	
12	진교면 안삼리	83-8	전	1,078	936		하동군	
13	진교면 안삼리	83-11	전	192	192		하동군	
14	진교면 안삼리	82	전	903	264	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20, 101동 1103호	장용	
15	진교면 안삼리	81-1	전	78	78		하동군	
16	진교면 안삼리	80-7	전	159	159		하동군	
17	진교면 안삼리	산17-1	임	921	921		하동군	
18	진교면 안삼리	산18-8	임	1,260	1,260		하동군	
19	진교면 안삼리	80-9	임	59	59		국(기획재정부)	
20	진교면 안삼리	80-8	전	102	102		하동군	
21	진교면 안삼리	79-1	전	144	144		하동군	
22	진교면 안삼리	78-1	답	92	92		하동군	
23	진교면 안삼리	74-2	답	338	338		하동군	
24	진교면 안삼리	76-2	전	9	9		하동군	
25	진교면 안삼리	74-1	구	1,410	1,055		한국농어촌공사	
26	진교면 안삼리	71-4	답	17	17		하동군	
27	진교면 안삼리	72-3	답	49	49		하동군	
28	진교면 안삼리	73-2	전	81	81		하동군	
29	진교면 안삼리	73-1	구	270	222		한국농어촌공사	
30	진교면 안삼리	94-3	구	383	161		한국농어촌공사	
31	진교면 안삼리	62-1	구	407	278		한국농어촌공사	
32	진교면 안삼리	61-1	구	221	131		한국농어촌공사	
33	진교면 안삼리	62-2	임	681	495		하동군	
34	진교면 안삼리	62-3	구	46	26		한국농어촌공사	
35	진교면 안삼리	63-1	전	201	201		하동군	
36	진교면 안삼리	64-1	전	33	33		하동군	
37	진교면 안삼리	59-2	전	30	30		하동군	
38	진교면 안삼리	58-3	전	17	17		하동군	

구분	위치	지번	지 목	면적(m ²)		소유자		비고
				대장 면적	편입 면적	주소	성명	
39	진교면 안삼리	58-4	전	218	218	고룡리	아*숙	
40	진교면 안삼리	66-3	전	61	61	19-6	황*학	
41	진교면 안삼리	564	도	711	510		국(국토교통부)	
42	진교면 안삼리	67-1	답	541	541		하동군	
43	진교면 안삼리	68-5	과	57	57		하동군	
44	진교면 안삼리	68-8	목	87	87		하동군	
45	진교면 안삼리	565	도	231	128		국(국토교통부)	
46	진교면 안삼리	산1-10	임	2,448	2,448		하동군	
47	진교면 안삼리	산1-2	도	258	130		국(국토교통부)	
48	진교면 안삼리	556	구	24,162	1,163		국(국토교통부)	
49	진교면 안삼리	563	도	909	813		국(국토교통부)	
50	진교면 안삼리	562	도	298	1		국(국토교통부)	
51	진교면 고통리	산52-3	임	209	209		하동군	
52	진교면 고통리	산52-1	도	198	198		국(국토교통부)	
53	진교면 고통리	산53-4	임	365	365		하동군	
54	진교면 고통리	701-1	임	648	604		하동군	
55	진교면 고통리	700-4	전	289	289		하동군	
56	진교면 고통리	700-6	전	25	25	하동군 진교면 남양안길 18-13	아*식	
57	진교면 고통리	702-4	임	43	43	486	장*복	
58	진교면 고통리	702-3	전	311	311	진주시 상봉서동 858-5	장*준	
59	진교면 고통리	703-3	전	283	283		하동군	
60	진교면 고통리	868	도	499	495		국(국토교통부)	
61	진교면 고통리	864	구	17,730	184		국(국토교통부)	
62	진교면 고통리	707-1	답	49	49		하동군	
63	진교면 고통리	709-1	전	189	189		하동군	
64	진교면 고통리	708-1	전	134	134		하동군	
65	진교면 고통리	710-5	임	143	143		하동군	
66	진교면 고통리	710-4	전	12	12		하동군	
67	진교면 고통리	산56	임	793	793		하동군	
68	진교면 고통리	산55-17	임	514	514		하동군	
69	진교면 고통리	711-1	답	60	60		하동군	
70	진교면 고통리	712-1	답	105	105		하동군	
71	진교면 고통리	715-14	창	146	146		하동군	
72	진교면 고통리	715-15	답	250	250		하동군	

구분	위치	지번	지 목	면적(m ²)		소유자		비고
				대장 면적	편입 면적	주소	성명	
73	진교면 고통리	716	도	42	42		하동군	
74	진교면 고통리	715-9	답	323	323		하동군	
75	진교면 고통리	715-13	답	533	533		하동군	
76	진교면 고통리	717-2	답	190	190	노량리 485	강*목 외 2인	
77	진교면 고통리	717-1	구	5	4	노량리 485	강*목 외 2인	
78	진교면 고통리	산55-14	임	114	114		하동군	
79	진교면 고통리	743-4	답	313	313		하동군	
80	진교면 고통리	743-1	구	21	21		한국농어촌공사	
81	진교면 고통리	742	구	251	185		한국농어촌공사	
82	진교면 고통리	735-1	구	126	117		한국농어촌공사	
83	진교면 고통리	741-2	답	5	5		하동군	
84	진교면 고통리	741-1	구	3	3		한국농어촌공사	
85	진교면 고통리	738-1	구	263	221		한국농어촌공사	
86	진교면 고통리	738-2	전	17	17		하동군	
87	진교면 고통리	736	구	132	132		한국농어촌공사	
88	진교면 고통리	737	구	96	96		한국농어촌공사	
89	진교면 고통리	734-1	구	220	220		한국농어촌공사	
90	진교면 고통리	산66-1	구	1,015	1,015		한국농어촌공사	
91	진교면 고통리	733-1	전	24	24		하동군	
92	진교면 고통리	산66-4	임	107	107		하동군	
93	진교면 고통리	산68-6	구	184	179		한국농어촌공사	
94	진교면 고통리	743-3	답	35	35		하동군	
95	진교면 고통리	산67	구	595	396		한국농어촌공사	
96	진교면 고통리	757-1	구	204	204		한국농어촌공사	
97	진교면 고통리	757-2	대	175	175		하동군	
98	진교면 고통리	758-1	답	47	47		하동군	
99	진교면 고통리	754-7	전	354	354		하동군	
100	진교면 고통리	754-2	구	473	473		한국농어촌공사	
101	진교면 고통리	756	답	73	73		하동군	
102	진교면 고통리	755-3	답	935	264		하동군	
103	진교면 고통리	755-1	구	614	371		한국농어촌공사	
104	진교면 고통리	869	도	1,392	1,023		국(국토교통부)	
105	진교면 고통리	870	구	2,294	128		국(국토교통부)	
106	진교면 고통리	870-1	도	153	149		국(기획재정부)	

구분	위치	지번	지 목	면적(m ²)		소유자		비고
				대장 면적	편입 면적	주소	성명	
107	진교면 안삼리	108-3	대	11	11		하동군	
108	진교면 안삼리	563-2	도	1,587	1,074		국(국토교통부)	
109	진교면 안삼리	64-2	전	184	184		하동군	
110	진교면 안삼리	67	답	752	366		하동군	
111	진교면 안삼리	556-3	구	93	34		국(국토교통부)	
112	진교면 안삼리	556-4	구	222	15		국(국토교통부)	
113	진교면 안삼리	68-6	과	11	11		하동군	
114	진교면 안삼리	68-7	과	33	33		하동군	
115	진교면 고통리	산53-5	임	82	82		하동군	
116	진교면 고통리	산55-16	임	190	190		하동군	
117	진교면 고통리	710-3	전	6	6		하동군	
118	진교면 고통리	715-12	도	24	24		하동군	
119	진교면 고통리	715-11	도	19	19		하동군	
120	진교면 고통리	715-10	도	39	39		하동군	
121	진교면 고통리	716-2	답	20	20		하동군	
122	진교면 고통리	716-1	도	7	7		하동군	
123	진교면 고통리	산55-15	임	8	8		하동군	
124	진교면 고통리	733	전	69	69		하동군	
125	진교면 고통리	757	대	57	57		하동군	
126	진교면 고통리	758	답	75	75		하동군	
합계				78,829	30,183			

하동군 공고 제2023 - 1294호

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5일

하 동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
2. 제안 이유 : 인구소멸지역인 하동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여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, 인구감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3. 주요 내용
 - 가. 제2조 제7호를 제8호로 함
 - 나. 제2조 제7조의 신설
 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4조제6항 및 「지방자치분과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호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

4. 의견 제출 :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인
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하동군(참조 : 안전교통과, 055-88
0-2393 FAX 055-880-2249, nakjs0402@korea.kr)에 **【별지 서
식】**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별지서식】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【별지】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규칙)안 내용	의 견	비고

하동군 조례 제 호

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4조제6항 및 「지방자치분과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호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재정지원) 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7. (생략)</p>	<p>제2조(재정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<u>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</u>」 제24조제6항 및 「<u>지방자치분과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2호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